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 개최

2002년 6월 3일~6월 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서는 합병규제절차의 국제적 조화의 촉진과 우량고객 할인판매(Fidelity discounts), 첨단혁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새로운 경쟁이슈를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병규제절차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최근 들어 대단히 구체적이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합병규제절차의 신고기준(thresholds)은 규모기준과 시장점유율기준 등 두 가지 유형이 주로 이용되는데 매출액, 자산액 등 규모를 이용한 기준은 객관성이 높은 반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합병까지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기업의 신고비용과 정부의 심사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한편, 시장점유율을 이용한 기준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심사대상으로 용이하게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객관성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규모를 이용한 기준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외국기업간 결합시 신고기준은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기업간 결합이라고 하더라도 자국내에 일정한 자산이나 매출 등 그 국가와 일정한 관련(local nexus)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추세로 이 경우에도 결합당사회사 모두에게 일정한 자국소재기준을 요구하는 유형(미국, EU, 프랑스 등)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당사회사에만 자국소재기준을 요구하는 유형(독일, 일본, 캐나다 등)이 있다.

신고기한(timing)은 합병개시사건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운용하고 있으나 합병개시사건의 정의에 관하여는 합병에 관한 결정적 합의(예: 합병계약서의 체결 등)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과 단지 합병거래를 성사시킬 의사(예: 거래의향서의 체결 등)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시각으로 나뉘었다.

둘째, 「우량고객 할인판매관행」(fidelity discounts)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들이 항공마일리지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검토하여 이를 위법화 한 사례가 있었는데, 우량고객 할인판매는 효율성효과와 반경쟁효과를 모두 갖추고 있으나 할인율의 정도와 당해 시

장의 독과점정도 등에 따라 반경쟁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는 것이 OECD 사무국의 지적이었다.

즉,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할인혜택이 돌아가고 생산자에게는 수요변동폭을 감소시켜 재고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소비자의 전환비용을 높이고, 구매자와의 배타적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할인수준이 원가이하로 내려갈 경우 약탈가격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산업이나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에서 fidelity discounts가 과도하게 이용될 경우에는 경쟁제한적인 폐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승자독점적인 상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fidelity discounts를 보는 시각과 제도적인 접근방식은 나라에 따라 매우 다양했으며 다만, 노르웨이, 스웨덴 등 몇몇 국가가 항공마일리지서비스에 대해 fidelity discounts관점에서 위법화 한 사례가 있다.

셋째, 기술혁신이 매우 급속하게 일어나는 첨단혁신시장에서는 새로운 합병심사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통적인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다만, 시정조치는 보다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첨단혁신시장(high innovation market)은 일반적으로 업체들의 R&D가 활발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급속한 기술혁신이 발생하고, 수확체증, 네트워크 효과, 선점경쟁 등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여 기존 사업자를 붕괴시키는 동태적 경쟁이 매우 활발하여 일부에서는 시장의 힘에 의해 스스로 경쟁상태로 자동 복귀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첨단혁신시장에서는 동태적 경쟁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효과, 수확체증, 전환비용 등에 의해 독과점체제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커 합병심사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OECD 사무국은 지적하였다.

한편, 첨단혁신시장에서는 가격보다는 상품차별에 의해 경쟁이 이루어지고 시장점유율이 매우 급격하게 변동하는 등 경쟁의 양상이 전통적인 시장과는 달라 관련시장을 확정할 후 시장점유율을 산출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전통적인 합병심사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첨단혁신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합병심사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과 사례들이 제기되었다. 다만, 첨단혁신시장에서는 동태적 경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산매각 등 구조적인 시정조치보다는 지적재산권 시행의무화 등 행태적 시정에 비중을 두는 유연한 시정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공정**